

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  
(수시 공시)

2016.2.26

코스모캐피탈

본 공시자료는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 제50조 제3항 및 제4항,  
동법 시행령 제19조의2, 제19조의3, 제19조의4,  
제23조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제23조의  
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.

(제5-7호)

###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

※ 공시근거 :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3항

1. 대주주명	신안건설산업(주) (최대주주)	
2. 신용공여내용	신용공여일	2016.2.24
	신용공여종류	대출금
	신용공여금액(원)	3,200백만원
	신용공여총잔액(원)	3,400백만원
	만기일	2017.03.21
	신용공여금리(%)	7.00%
3. 자금용도	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자금	
4. 이사회결의일	2016.02.23	
5. 기타	-	

[작성요령]

- 주1) 대주주와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중 적은 금액이상의 신용공여시 기재
- 주2) “대주주명”에는 최대주주, 주요주주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 신용공여를 한 개별개인 또는 법인명을 기재(법인명은 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상호로 기재)
- 주3) “신용공여종류”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각호에 따른 신용공여 범위의 분류에 따름(예: 대출, 지급보증, 리스물건취득 및 제반비용 할부금융이용액 등)
- 주4) “신용공여총잔액”은 해당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한 총잔액을 말함
- 주5) “기타”에는 담보의 종류, 평가액, 주요특별약정내용 등을 기재